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18 선고 2020가합403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상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안, 담당변호사 박재욱

피고1. C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노아라, 안선모, 이윤선, 장영돈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변론 종결2023. 3. 7.

판결 선고2023. 4.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229,593,533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1.부터 2023.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C은 원고 A에게 759,976,187원, 원고 B에게 744,975,1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9. 21.부터 2023.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12. 17. 접수 제72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12. 17. 접수 제72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34,232,582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317,093,533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사건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원고 A에게 759,976,187원, 원고 B에게 1,379,415,0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0.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C, E1) 이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G동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였는데, 피고 C, D이 2015. 12. 17. 이 사건 G동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은 2015. 12. 27.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706호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16. 11. 22.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0. 21. 공증인 I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817호로 망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이라 한다), J조합(계좌번호 1 생략) 예금,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예금,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예금, 광주시 L아파트 M호의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광주시 N아파트 O호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부동산 소유권 일체를 피고 C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8.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6.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7. 10.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들과 피고 C은 2017. 7. 7.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599호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4. 망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망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원고 A과 변호사 P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사. 피고 C은 2019. 11. 6.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2013. 7. 29.부터 2017. 12. 30.까지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별지3, 4 목록 기재와 같은 금원이 계좌이체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9, 10, 11, 12, 13, 14, 15, 28호증, 을다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의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G동 부동산 증여 및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 유증은 모두 망인이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G동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G동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사정을 이용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및 대출금을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2,136,930,33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534,232,5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사정을 이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및 대출금을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1,268,374,132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317,093,5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G동 부동산 증여 및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 유증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 흠결 상태가 아니었고, 망인의 은행계좌 거래도 망인의 지시 또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망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6, 17, 18, 19, 21, 22, 23, 24, 60호증, 을가 제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13. 5. 31.과 2013. 12. 24. 서울시 중구 보건소에서 치매관련 검사를 받았는데, K-MMSE검사 결과 30점 만점에 20점을 받았고, 퇴행성 치매 위험 및 혈관성 치매 위험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5. 16.경 광주시 보건소에서 K-MMSE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14점이었다.

다) 피고 E이 2015. 12. 27. 서울가정법원 2015노단31706호로 청구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원고 B은 2016. 9. 23. 망인은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력과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망인은 2016. 10. 11. 위 사건의 제1차 심문기일에 출석에서 '후견개시에 반대하며, 지금까지 건물관리를 망인이 해 왔는데 멀쩡한 사람에게 이런 사건을 청구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여 가슴이 떨리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루는 지경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1. 22. 제2차 심문기일에서 망인의 가사도우미였던 Q이 출석하여 '망인은 똑같은 말을 3~4번 정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1. 2.경 R대학교에서 치매관련 검사를 받았는데, K-MMSE 검사 결과 14점, CDR검사 결과 0.5점이었고, 망인의 상태는 치매 단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로 판단되고, 일상생활기능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마) 피고 E은 2017. 5. 3.경부터 망인을 모시게 되었는데, 망인이 2017. 5. 4. S센터에서 받은 K-MMSE검사 결과는 11점이었고, 망인은 같은 날 T병원에서 최근 기억을 못하고, 반복적인 이야기, 낯짜, 사람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병원으로부터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바) 망인이 2017. 7. 4.경 U병원에서 받은 K-MMSE검사 결과 11점, CDR검사 결과 2점이었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2017. 6. 19.경 작성된 위 병원 기록에 의하면, 보호자 진술로 '망인의 인지기능이 떨어진다. 계절 감각이 떨어진다. 딸인지 동생인지도 모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들과 피고 C이 2017. 7. 7.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599호로 청구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위 U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8. 2. 2. 망인의 상태는 중등도의 치매로 평가되고, 기본적인 자조활동에서는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추정되며, 특히 고도의 인지기능을 필요로 하는 금전관리 등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아) 망인이 2018. 3. 21.경 V병원에서 받은 K-MMSE검사 결과 12점, CDR검사 결과 3점이었는데, 위 병원 진료기록에는 '간단한 질문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심. 자녀 순서, 이름도 알지 못하심. 아들 며느리와 살고 계신데 혼자 살고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K-MMSE(Korean 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30점 만점에 23점 이하이면 치매 의심, 19점 이하이면 확정적 치매, 14점 이하이면 중증 치매로 분류된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적 치매척도)는 0점(정상)부터 5점(말기 치매)으로 분류되는데, 0.5점은 치매가 의심스러움, 2점은 중등도, 3점은 중증에 해당한다.

2)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은 2016. 11. 2. 무렵까지는 인지능력을 비교적 유지해왔으나, 이후 T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2017. 5. 4. 무렵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간 인지능력도 부족한 확정적 치매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G동 부동산을 증여한 2015. 12.경 및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2016. 10.경에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17. 5.경부터는 치매로 인하여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 즉,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G동 부동산 증여 당시,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 유증 당시 및 피고 C이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및 대출금을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수표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7. 5.경부터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금원이 계좌이체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이 피고 E에게 망인의 은행 계좌 관리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망인을 모시게 된 2017. 5.경 이후부터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1,268,374,132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원 반환 주장

피고 E은, 망인의 예금계좌로 2017. 8. 1. 300,000,000원, 2017. 12. 27. 10,000,000원, 2018. 1. 4. 40,000,000원의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 E이 이체하거나 인출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2017. 8. 1.

300,000,000원, 2017. 12. 27. 10,000,000원, 2018. 1. 4. 40,000,000원을 망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50,000,000원은 부당이득반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증여 주장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은 모두 망인이 피고 E에게 증여한 것이고, 망인은 2017. 7.경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딸 E에게 준 돈은 나에게 잘해 달라고 준 것이며 딸 E에게 준 돈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7. 7. 2.자 망인 명의의 진술서 및 '망인은 E에게 준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17. 1. 7.자2) 망인 명의의 진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망인이 위 돈을 피고 E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서와 각서 역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주장

피고 E은, 망인에 대하여 평택시 W리 부동산에 관한 673,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망인의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25, 26,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2002. 2. 25. 평택시 X 임야 4,463㎡, Y 답 670㎡, Z 전 430㎡(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평택 부동산'이라 한다)를 AA으로부터 매수하고 2002. 4. 4. 이 사건 평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E은 2004. 8. 9. 이 사건 평택 부동산을 매매대금 673,000,000원에 AB 등에게 매도한 사실, 망인 명의의 2015. 9. 30.자 각서에는 '망인이 E의 딸인 평택시 W리 위의 부동산은 AC에 있는 E 소유의 집을 팔아 산 것으로 평택시 W리 부동산을 딸의 동의 없이 판 것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돈을 딸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2016. 9. 23.경 망인에게 '이 사건 평택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초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결과 나도 모르게 소유주가 AB로 되어 있는바, 팔 당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은 누가 쓴 것이며, 매매대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실대로 답변하고, 만일 망인이 답변을 미루거나 사실에 관련된 답변이 아닐 때에는 재산 전반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E은 2016년 초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평택 부동산이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망인 명의의 위 각서는 그 시점보다 이전인 2015. 9. 30.에 작성된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 명의의 2015. 9. 30.자 각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E이 망인에 대하여 673,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 반환 범위 제한 주장

피고 E은, 2018. 1. 27. 원고들과 피고 E이 망인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E의 책임을 650,000,000원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E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650,0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6호증, 을다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E은 '2018. 1. 27. 망인의 통장 사용액 95,000,000원과 성남건물 대출금 70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 E이 망인 통장으로 30,000,000원, 현찰로 20,000,000원, AD동 건물 매각시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합의서는 피고 E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망인이 아닌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된 점, ② 위 변제금 중 30,000,000원은 망인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③ 위 합의서 작성 당시는 망인에 대한 후견개시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원고들이 망인을 대리하여 위 합의를 작성할 권한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E의 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650,000,000원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229,593,533원[=918,374,132원(1,268,374,132원 - 350,000,000원) × 상속지분 1/4]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의 악의가 인정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31.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는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관련 법리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본소), 2012다104106(반소) 판결 등 참조].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29157 판결 등 참조). 이때 환산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률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11. 25.자 2013스112 결정(본심판), 2013스113(반심판)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나) 적극적 상속재산액

1	A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286,593,200원	피고 C에게 유증
2	성남시 중원구 AE 대 658.9m ²	250,180,950원	피고 C에게 유증
3	성남시 중원구 AE 지상 건물	7,800,000원	
4	서울 중구 AF 대 3m ²	5,200,000원	
5	서울 중구 AG 대 2m ²	18,200,000원	
6	서울 중구 AH 대 7m ²	270,000,000원	피고 C에게 유증
7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918,374,132원	
합계	4,756,348,28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5, 36, 37, 38, 7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증여재산액

(1) 인정 부분

1	원고 A	서울 중구 AK 대 145m ² 중 110/145 지분	888,800,000원	갑 제44, 70호증
2	원고 A	서울 중구 AK 지상 건물	13,438,890원	갑 제70호증, 을가 제20호증
3	원고 A	1996년경 서울 관악구 AL건물, AM호 전세자금 40,000,000원	62,464,558원4) =62,464,558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6.519(199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4	원고 A	2007. 9. 17.자 현금 2,000,000원	2,452,763원5) =2,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2호증
5	원고 A	2007. 10. 22.자 현금 2,000,000원	2,452,763원	을가 제32호증
6	원고 A	2007. 11. 12.자 현금 2,000,000원	2,452,763원	을가 제32호증
7	원고 A	2008. 4. 15.자 현금 4,000,000원	4,770,689원6) =4,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7.096(200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2호증
8	원고 B	서울 중구 AK 대 145m ² 중 35/145 지분	282,800,000원	갑 제44, 70호증
9	원고 B	1988년경 안산시 단원구 AN 전 2,073m ² 매수대금 60,000,000원	164,792,575원7) =6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1.588(199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1호증, 제33호증의 1
10	원고 B	1993년경 서울 강남구 AO아파트 AP호 매수대금 165,000,000원	310,524,403원8) =165,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1.588(199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14, 31호증
11	원고 B	2000. 3. 22.자 현금 50,000,000원	72,017,776원9) =5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2.017(200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1
12	원고 B	2000. 3. 24.자 현금 8,000,000원	11,522,844원10) =8,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을가 제35호증의 1

1	원고 A	서울 중구 AK 대 145m ² 중 110/145 지분	888,800,000원	갑 제44, 70호증
			72.017(200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3	원고 B	2000. 12. 26.자 현금 14,000,000원	20,164,977원11) =14,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2.017(200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1
14	원고 B	2002. 2. 7.자 현금 22,000,000원	29,720,829원12) =22,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6.892(2002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2
15	원고 B	2006. 7. 11.자 현금 11,048,500원	13,877,355원13) =11,048,5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16	원고 B	2006. 8. 1.자 현금 19,190,300원	24,103,779원14) =19,19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17	원고 B	2006. 8. 11.자 현금 5,000,300원	6,280,575원15) =5,00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18	원고 B	2006. 9. 1.자 현금 8,690,300원	10,915,362원16) =8,69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19	원고 B	2006. 10. 31.자 현금 10,000,300원	12,560,774원17) =10,00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0	원고 B	2007. 3. 8.자 현금 1,004,510원	1,231,912원18) =1,004,51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1	원고 B	2007. 8. 29.자 현금 2,000,000원	2,452,763원19) =2,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1	원고 A	서울 중구 AK 대 145m ² 중 110/145 지분	888,800,000원	갑 제44, 70호증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2	원고 B	2007. 9. 11.자 현금 3,900,000원	4,782,889원20) =3,9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3	원고 B	2008. 4. 3.자 현금 3,190,000원	3,804,625원21) =3,19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7.096(200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4	원고 B	2009. 6. 30.자 현금 1,698,540원	1,955,243원22) =1,698,54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0.239(200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5	원고 B	2009. 7. 8.자 현금 1,605,450원	1,848,084원23) =1,605,45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0.239(200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6	원고 B	2009. 8. 18.자 현금 1,477,500원	1,700,797원24) =1,477,5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0.239(200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7	원고 B	2010. 2. 19.자 현금 4,835,500원	5,417,940원25) =4,835,5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2.71(201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8	원고 B	2010. 8. 19.자 현금 10,000,000원	11,204,508원26) =1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2.71(201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29	원고 B	2014. 11. 3.자 현금 1,600,000원	1,714,973원27) =1,6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6.913(2014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을가 제35호증의 3
30	피고 C	서울 중구 AQ 대 221m ² 및 그 지상 건물	1,749,487,560원28)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담보채무가	갑 제5, 6, 70호증

1	원고 A	서울 중구 AK 대 145m ² 중 110/145 지분	888,800,000원	갑 제44, 70호증
			상속인 자신의 것이 아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의 대가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 2,049,487,560원에서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범위 내에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본다.	
31	피고 C	서울 중구 AR 대 76m ² 및 그 지상 건물	613,567,580원	갑 제7, 8, 70호증
32	피고 C	1996년경 서울 관악구 AL건물, AS호 전세자금 40,000,000원	62,464,558원29) =4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6.519(199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피고 C 인정
33	피고 C	2004. 7. 16.자 현금 290,000,000원	367,226,570원30) =29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032(2004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갑 제41호증
34	피고 C	2013. 7. 29.자 현금 15,000,000원	16,223,683원31) =15,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6.042(2013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갑 제9호증
35	피고 C	2013. 8. 12.자 현금 15,000,000원	16,223,683원	갑 제9호증
36	피고 C	2015. 1. 30.자 현금 100,000,000원	103,877,000원32) =10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갑 제9호증, 을가 제23호증
37	피고 C	2015. 2. 23.자 수표 590,000,000원33) 갑 제9호증, 을가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0. 11.자 망인과 피고 E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망인이 용자를 빼서 피고 C에게 70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C에게 2015. 1. 30. 송금된 100,000,000원, 2015. 9. 9. 송금된 300,100,000원 및 2015. 2. 23.	612,874,300원34) =59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갑 제9호증, 을가 제23호증

1	원고 A	서울 중구 AK 대 145m ² 중 110/145 지분	888,800,000원	갑 제44, 70호증
		59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되기 전에 각 망인 계좌에 '연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 600,000,000원, 30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C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8	피고 C	2015. 9. 9.자 현금 300,100,000원	311,734,877원35) =300,1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갑 제9호증, 을가 제23호증
39	피고 C	2016. 12. 22.자 현금 60,000,000원	61,112,505원36) =6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1.986(201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갑 제10호증
합계	5,887,019,725원			

(가) 순번 2부분

피고 C은, 망인이 서울 중구 AK 지상 건물의 수리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가액이 18,438,89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위 수리비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위 수리비를 증여재산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이 18,438,89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번 3부분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원고 A에게 서울 관악구 AL건물, AM호의 전세자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위 40,000,000원과 원고 A의 돈 60,000,000원을 합하여 서울 서초구 AT 전세금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40,000,000원을 망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40,000,000원은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순번 4 내지 7부분

원고 A은, 위 각 돈은 원고 A이 뇌경색과 치매 증세를 보이던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보살피게 되자

망인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A은 위 각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순번 9부분

원고 B은,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망인에게 위 매수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순번 10 부분

원고 B은, 망인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순번 11 내지 29번

원고 B은, 위 각 돈은 원고 B이 AU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와 관련하여 받은 당좌어음이나 수표를 망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B은 위 각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순번 30 부분

피고 C은, 이 사건 G동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인이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 C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참조).

피고 C, D이 2015. 12. 17. 이 사건 G동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D은 부부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라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피고 C 부부와 같이 살고 싶다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 D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 사건 G동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D이 한국에 들어오면 피고 C 부부 자녀들의 학비가 늘어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D에게 증여하였던 점, ③ 망인이 며느리인 피고 D에게 별도로 재산을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앞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 C의 변제 주장

피고 C은,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2010. 1. 22.경부터 2017. 11. 3.경까지 709,887,920원 상당을 망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위 709,887,920원 상당은 피고 C의 특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달리 위 금원을 피고 C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척 부분

1	원고 A	서울 서초구 AT, 1층 전세자금	120,000,000원	증거 없음
2	원고 A	미국 생활자금	93,000,000원	갑 제8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
3	원고 A	서울 중구 AV아파트 상가 AW호 매수자금	800,000,000원	
4	원고 A	2007. 11. 25.자 현금	15,000,000원	
5	원고 A	2008. 5. 6.자 현금	60,000,000원	
6	원고 A	2008. 5. 8.자 현금	10,000,000원	
7	원고 B	서울 구로구 AX상가 AY호 매수자금		증거 없음

1	원고 A	서울 서초구 AT, 1층 전세자금	120,000,000원	증거 없음
8	피고 E	1982년경 구립 AZ어린이집 기부채납액 대납금	50,000,000원	증거 없음
9	피고 E	1997년경 구립 AZ어린이집 반환채무 대납금	50,000,000원	을가 제2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
10	피고 E	서울 중구 AC 대 112m ² 및 그 지상 건물 매수자금	975,006,600원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
11	피고 E	서울 관악구 BA 대 212.6m ² 및 그 지상 건물 매수자금	1,937,969,900원	
12	피고 E	2017. 6. 9. 수표	100,000,000원	증거 없음
13	피고 E	2017. 6. 21.자 현금	70,000,000원	
14	피고 E	2017. 7. 4.자 현금	600,000,000원	
15	피고 E	2017. 7. 25.자 현금	58,000,000원	
16	피고 E	2017. 8. 2.자 현금	150,000,000원	
17	피고 E	2017. 10. 7.자 현금	12,000,000원	
18	피고 C	서울 중구 AR 대 76m ²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8,000,000원	증거 없음
19	피고 C	1991년경 컴퓨터 사업자금	30,000,000원	증거 없음
20	피고 C	2010년경 전세자금	120,000,000원	증거 없음
21	피고 C	서울 중구 BB 대 153m ² 및 그 지상 건물 매수자금	1,163,454,500원	
22	피고 C	2008년경 현금	30,000,000원	증거 없음
23	피고 C	2014. 10. 14.자 수표	10,000,000원	
24	피고 C	2016. 5. 23.자 수표	8,000,000원	
25	피고 C	2016. 11. 15.자 수표	10,000,000원	
26	피고 C	2013. 11. 12.자 수표	25,000,000원	
27	피고 C	2013. 11. 12.자 수표	225,000,000원	
28	피고 C	2015. 4. 13.자 수표	70,000,000원	

1	원고 A	서울 서초구 AT, 1층 전세자금	120,000,000원	증거 없음
29	피고 C	2015. 11. 15.자 수표	12,000,000원	

(가) 순번 3부분

피고 C은,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AV아파트 상가 AW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6호증,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배우자인 BC가 1999. 11. 13.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 10.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BC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BC가 이 사건 상가 매수대금 전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여받은 매수대금 액수도 특징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번 4 내지 6 부분

피고 C은,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8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 A에게 2007. 11. 25. 15,000,000원, 2008. 5. 6. 60,000,000원, 2008. 5. 8. 1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4호증, 을가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11. 25.자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07. 11. 28. 원고 A이 망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점, ③ 2008. 5. 6.자 60,000,000원, 2008. 5. 8.자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날과 그 다음날 위 금액에 상당하는 돈이 피고 C과 피고 C이 거래하던 업체로 바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번 12 내지 17번

원고들은, 망인의 계좌에서 2017. 6. 9. 수표로 발급된 100,000,000원,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E 계좌로 2017. 6. 21. 송금된 70,000,000원, 2017. 7. 4. 송금된 600,000,000원, 2017. 7. 25. 송금된 58,000,000원, 2017. 8. 2. 송금된 150,000,000원, 2017. 10. 7. 송금된 12,000,000원이 피고 E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7. 6. 9. 100,000,000원짜리 수표가 발급된 사실, 망인의 계좌에서 2017. 6. 21. 70,000,000원, 2017. 7. 4. 600,000,000원, 2017. 7. 25. 58,000,000원, 2017. 8. 2. 150,000,000원, 2017. 10. 7. 12,000,000원이 각 피고 E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관한 판단 중 나. 망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이상 다시 이를 피고 E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순번 21번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C에게 서울 중구 BB 대 153m²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고, 그 가액이 1,163,454,500원(=토지 가액 1,141,380,000원 + 건물 가액 22,074,5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5, 68, 7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거나 증여한 돈이 1,163,454,5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순번 23 내지 29번

원고들은,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위 표 순번 23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수표가 피고 C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속채무액

(1) 인정 부분

망인의 사망 당시(2019. 10. 11.) 망인의 채무로 BD은행 대출금 채무 1,695,000,000원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배척 부분

○ 재산세 대납으로 인한 구상채무 7,309,500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데, 갑 제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9. 9. 30. 망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7,309,5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은 그 이후인 2019. 10. 11.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9. 10.분 미납 건강보험료 318,060원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건강보험료가 망인에게 부과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재산액은 8,948,368,007원(=적극적 상속재산 4,756,348,282원 + 증여재산액 5,887,019,725원 - 상속채무액 1,695,000,000원)이다.

3)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과 피고 C, E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은 각 1/4이고,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C, E의 유류분 비율은 각 1/8(=1/4 × 1/2)이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8,948,368,007원에 위 유류분 비율인 1/8을 곱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은 1,118,546,000원(=8,948,368,007원 × 1/8)이 된다.

4) 특별수익액(C) 망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형성된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의 특별수익액 : 976,832,426원(수증액)

○ 원고 B의 특별수익액 : 995,394,983원(수증액)

○ 피고 C의 특별수익액 : 7,721,566,466원(=수증액 3,914,792,316원 + 수유액 3,806,774,150원)

○ 피고 E의 특별수익액 : 0원

5) 순상속분액(D) 가) 관련 법리

(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간주상속재산),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3)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간주상속재산 : 10,643,368,007원(=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 4,756,348,282원 + 생전증여의 가액 5,887,019,725원)

(2)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10,643,368,007원	1/4	2,660,842,001원	976,832,426원	1,684,009,575원
원고 B	10,643,368,007원	1/4	2,660,842,001원	995,394,983원	1,665,447,018원
피고 C	10,643,368,007원	1/4	2,660,842,001원	7,721,566,466원	-5,060,724,465원
피고 E	10,643,368,007원	1/4	2,660,842,001원	0원	2,660,842,001원

(3)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1차)

위와 같이 피고 C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없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E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위 초과특별수익 5,060,724,465원을 안분하여 부담하면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1,684,009,575원	5,060,724,465원	1/3	1,686,908,155원	-2,898,580원
원고 B	1,665,447,018원	5,060,724,465원	1/3	1,686,908,155원	-21,461,137원
피고 E	2,660,842,001원	5,060,724,465원	1/3	1,686,908,155원	973,933,846원

(4)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2차)

원고들은 피고 C의 초과특별수익을 위 (3)항과 같이 안분하여 부담할 경우, 그 부담액이 자신이 받을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초과특별수익 24,359,717원을 다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E이 수정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E	973,933,846원	24,359,717원	1/1	24,359,717원	949,574,129원
------	--------------	-------------	-----	-------------	--------------

(5) 순상속분액(D)의 산정

위 (4)항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상속채무 부담액을 공제하면 순상속분액(D)이 되는데, 상속채무가 1,69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인

원고들과 피고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0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순상속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0원	$423,750,000원(37) = 1,695,000,000원 \times \text{상속지분 } 1/4$	-423,750,000원
원고 B	0원	423,750,000원	-423,750,000원
피고 C	0원	423,750,000원	-423,750,000원
피고 E	949,574,129원	423,750,000원	525,824,129원

6) 유류분부족액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피고 C, E의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1,118,546,000원	976,832,426원	-423,750,000원	565,463,574원
원고 B	1,118,546,000원	995,394,983원	-423,750,000원	546,901,017원
피고 C	1,118,546,000원	7,721,566,466원	-423,750,000원	-6,179,270,466원
피고 E	1,118,546,000원	0원	525,824,129원	592,721,871원

7) 유류분 반환방법 및 반환범위 (가)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액을 얻었으므로 유류분의 반환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 C을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 C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방식은 가액반환에 의하기로 한다.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3,806,774,15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AJ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8. 1. 기준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4,915,494,700원(=성남시 중원구 AE 대 658.9m² 시가 4,649,857,300원 + 그 지상 건물 시가 265,637,4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를 기초로 피고 C의 가액반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565,463,574원	5,185,494,700원38) =부동산 가액 4,915,494,7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액 270,000,000원/3,806,774,150원	770,260,659원
B	546,901,017원	744,975,197원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759,976,187원, 원고 B에게 744,975,1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9. 21.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2019. 10. 11.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5,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0. 10. 5. 피고 C에게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20. 10. 6.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2021. 4.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20. 10. 5.경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송달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월 내인이 사건 2021. 4.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이상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피고 C은 2017. 6. 24.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는바, 망인이 2016. 10. 21.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유효하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6. 24.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일체를 원고 A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포기각서의 취지는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유증한다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있음을 알고 있던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을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74조). 따라서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수증자는 유증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피고 C이 망인 생전에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결국, 망인 생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포기각서는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포기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7. 5. 8.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와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성남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6.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졌고, 2017. 7.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관한 판단 중 나. 망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각 행위들이 망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행위가 망인의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종열

판사고지은

판사김동일

별지

- 1) 피고 E은 2015. 12. 18. H로 개명하였다가 2017. 4. 24. 다시 E으로 개명하였다.
- 2) 을다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각서의 작성일이 '2017년 일월 7일'로 되어 있는데, 피고 E은 이에 대하여 위 각서가 2017. 7. 초순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888,8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1.588(1995\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4) $=62,464,558\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6.519(1996\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5) $=2,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 $=4,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7.096(2008\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 $=60,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1.588(1995\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디플레이터 수치)

8) = 165,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1.588(199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 = 50,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2.017(200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 = 8,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2.017(200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1) = 14,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2.017(200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2) = 22,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6.892(2002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3) = 11,048,5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4) = 19,19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5) = 5,00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6) = 8,69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7) = 10,000,3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702(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8) = 1,004,51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9) = 2,0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0) = 3,900,000원 × 103.877(2019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4.702(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1) $= 3,19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7.096(2008\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2) $= 1,698,54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0.239(200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3) $= 1,605,45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0.239(200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4) $= 1,477,5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0.239(200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5) $= 4,835,5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2.71(2010\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6) $= 10,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2.71(2010\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7) $= 1,6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6.913(2014\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8)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담보채무가 상속인 자신의 것이 아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의 대가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 2,049,487,560원에서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범위 내에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본다.

29) $= 40,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66.519(1996\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30) $= 290,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032(2004\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31) $= 15,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6.042(2013\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디플레이터 수치)

32) $= 100,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5\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33) 갑 제9호증, 을가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0. 11.자 망인과 피고 E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망인이 용자를 빼서 피고 C에게 70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C에게 2015. 1. 30. 송금된 100,000,000원, 2015. 9. 9. 송금된 300,100,000원 및 2015. 2. 23. 59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되기 전에 각 망인 계좌에 '연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 600,000,000원, 30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C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4) $= 590,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5\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35) $= 300,1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5\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36) $= 60,000,000\text{원} \times 103.877(2019\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1.986(2016\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37) $= 1,695,000,000\text{원} \times \text{상속지분 } 1/4$

38) $= \text{부동산 가액 } 4,915,494,700\text{원} + \text{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액 } 270,000,000\text{원}$